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8,455,517	14,653,666
일반회계	431,385,080	12,941,552
특별회계	57,070,437	1,712,113
공기업특별회계	50,011,399	1,500,342
상수도공기업	18,447,420	553,423
하수도공기업	31,563,979	946,919
기타특별회계	7,059,038	211,771
의료급여기금운영	1,277,756	38,33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61,136	13,834
농공지구조성사업	1,460,403	43,812
공영개발사업	410,810	12,3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014	3,120
수질개선	493,750	14,813
주택사업	2,330,953	69,929
기반시설	18,291	549
장기미집행	501,925	15,05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16,68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